

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09.12.16 ( 수 ) 16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 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#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발의자 : 권광택 의원 외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10월 16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## 3. 제안 이유

-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,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,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(안 제3조)
-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자금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벤처기업과 기술력 우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조항

신설(안 제9조)

-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사업 근거 마련(안 제9조의3)
-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규정(안 제9조의4)

## 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